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
----------	---------

제안연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상위법률의 인용규정을 명확히 하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중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함.
- 또한 학교내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학교내 석면의 신속한 해체·제거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 중 유치원의 상위법령 규정을 변경함(안 제4조제1호).
- 나.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1항).
- 다.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함(안 제9조제3항).
- 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석면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공사시 관련 자료를 공사작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마. 석면해제·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6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호의 “「유아교육법」 제7조” 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석면조사기관으로” 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로 한다.

안 제9조제3항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를 “석면해체·제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 제9조에 다음과 같이 제6항을 신설한다.

⑥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4조(적용범위) (생략)</p> <p>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p> <p>2. (생략)</p>	<p>제4조(적용범위) (원안과 같음)</p> <p>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p> <p>2. (원안과 같음)</p>
<p>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건축물 및 물질에 대해 <u>석면조사기관으로</u>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건축물 및 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u>석면조사기관으로</u>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⑤ (원안과 같음)</p>
<p>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p> <p>① ~ ② (생략)</p> <p>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u>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u>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u>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u>하여야 한다.</p>	<p>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p> <p>① ~ ② (원안과 같음)</p> <p>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u>석면해체·제거</u>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u>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u>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p>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석면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 설>

한다.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석면지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 건축물 및 물질의 안전한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2.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3.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석면 해체·제거 공사 일정) ① 학교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일정 등을 담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사계획을 검토한 후 공사업체의 공사 일정 및 각 학교의 석면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별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공사 시행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건축물 및 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①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과 관련한 학교별 통계 등의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편성·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에 적합한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교육 또는 석면안전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